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5. . . (제 회)	

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(행정안전부 소관)
제출 연월일	2025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법무부 소속기관인 교도소·구치소의 수용동 증축에 따라 수용동 교대 근무에 필요한 인력 46명(6급 4명, 7급 5명, 8급 17명, 9급 20명) 및 법무부 소속기관인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여성 위탁소년 전담시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(6급 1명, 7급 1명, 9급 1명)을 각각 증원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2025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 의 : 기획재정부 및 법무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정원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5. 8. 20. ~ 8. 25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

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7 중 총계 “22,890”을 “22,939”로, 일반직 계 “22,871”을 “22,920”으로,
3급 또는 4급 이하 “22,664”를 “22,713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 정원 대비 표

[별표 7]

법무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(제54조제1항 본문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 정 안	증 감
총 계	<u>22,890</u>	<u>22,939</u>	+49
일반직 계	<u>22,871</u>	<u>22,920</u>	+49
.	.	.	
.	.	.	
3급 또는 4급 이하	<u>22,664</u>	<u>22,713</u>	+49
.	.	.	
.	.	.	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	
연 락 처	(044) 205 - 2372